

서울특별시 강남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
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사보고서

2023. 8. 30.

행정재경위원회

의안 번호	224
----------	-----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3. 8. 18. 강남구청장(주민자치과)

나. 상정의결

- 제313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(2023. 8. 30.)
“원안가결”

2. 제안설명 요지(행정국장 : 이호현)

가. 제안이유

- 서울특별시 강남구 새마을운동조직의 지원 근거인 상위법 「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」을 명시하여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 지원 근거 마련

나. 주요내용

- 새마을운동조직의 지원 근거인 상위법 「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」을 명기
(안 제3조)

다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
 - 「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」 및 같은법 시행령
- 예산조치 : 별도조치 없음

○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○ 기 타

- 신·구조문대비표 : 별첨

- 입법예고(2023. 7. 14. ~ 2023. 8. 4.) 결과, 특기사항 없음

- 규제심사 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

- 부패영향평가 : 특기사항 없음

- 성별영향분석평가 : 특기할 사항 없음

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: 조성수)

○ 본 조례안은 그동안 조례 내에 운영비 지원 근거가 되는 법률 조문 인용 사항이 누락되어 이를 반영하여 법정지원 단체임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.

○ 본 조례안의 주요 변경사항을 살펴보면

- 현행 조례는 총 5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는데, 일부개정안은 제3조만을 개정하려는 것으로,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지원)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 1. ~ 5. (생략)	제3조(지원) ----- ----- ----- 「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」 제3조1)에 따라 다음 각 호의 ----- -----. 1. ~ 5. (현행과 같음)

1) 「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」 제3조(출연금의 지급 등)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금 및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.
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새마을운동 해외협력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. <신설 2019. 12. 10.>
 ③ 개인·법인 및 단체는 새마을운동조직을 지원·육성하기 위하여 운영 재원(財源)으로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할 수 있다. <개정 2019. 12. 10.>
 ④ 새마을운동조직에는 출연금 또는 특정 목적의 기부금을 재원으로 새마을운동조직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는 적립금을 둘 수 있다. <개정 2019. 12. 10.>
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연금, 보조금, 기부금의 사용·관리 및 적립금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19. 12. 10.> [전문개정 2011. 5. 30.]

- 현재 강남구 새마을운동조직 현황은 다음과 같음.

구 분	단체장	설립일	회원수	소재지	비 고
새마을운동 강남구지회	공 석	1980.8	560명	선릉로 706	• 협의회장: 라명찬 (지회장 대직 中) • 부녀회장: 박수경

4. 질의 및 답변 요지 : “생략”

5. 토론 요지 : “생략”

6. 심사결과 : “원안가결”

7. 소수의견의 요지 : “없음”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음”

붙임 서울특별시 강남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. 끝

서울특별시 강남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24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23. 8. 18.

제출자 : 강남구청장

제출부서 : 주민자치과

1. 제안이유

서울특별시 강남구 새마을운동조직의 지원 근거인 상위법 「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」을 명시하여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 지원을 명확히 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제3조(지원) 새마을운동조직의 지원 근거인 상위법 「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」을 명시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및 시행령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

- (1) 입법예고(2023. 7. 14. ~ 2023. 8. 4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- (2) 규제심사 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
- (3) 부패영향평가 : 특기할 사항 없음
- (4) 성별영향분석평가 : 특기할 사항 없음(분석평가 완료)

서울특별시 강남구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강남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강남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다음 각 호”를 “「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」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조(지원)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<u>다음 각 호의</u>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</p> <p>1. ~ 5. (생략)</p>	<p>제3조(지원) ----- ----- ----- <u>「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」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</u> ----- -----.</p> <p>1. ~ 5. (현행과 같음)</p>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

- 해당사항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4조제3항
1.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3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7억원 미만인 경우. 다만, “한시적”이란 사업기간 1년 이하의 사업을 말한다.

3. 미첨부 사유

-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 미발생

4. 작성자

- 주민자치과 행정7급 이정순(02-3423-5214)